

정 관

2000년	12월	27일	제정
2001년	3월	24일	개정
2002년	3월	27일	개정
2004년	3월	19일	개정
2009년	3월	13일	개정
2010년	10월	01일	개정
2011년	3월	1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14일	개정
2017년	3월	13일	개정
2018년	3월	12일	개정
2019년	3월	18일	개정
2021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1월	01일	개정
2023년	3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회사'라 한다)이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
2. 외국상사 대리업
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4. 군납업
5.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운영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7. 섬유 및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8.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9.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1.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12. 잡화 및 완구의 제조 및 판매업
13. 기계금속 및 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4. 일반상품 및 기타 생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5.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16. 광산, 석산개발 및 판매업
17. 철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18. 정보처리, 교육등 각종 용역업, 정보기기대여업
19.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창고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20.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공중목욕장(실내수영장)업
21. 산림, 축산, 원예업 및 농업
22.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 운영업

23.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업, 판매업과 자동차 관리사업
24. 수산물의 어획, 양식, 가공 및 판매업
25. 기록매체출판업, 데이터베이스업, 기술연구 및 기술용역 수탁업
26. 원유정제 및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7. 유선업
28.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유원지 운영업
29. 소프트웨어 판매 및 교육사업
30. 플랜트의 설계, 제작, 시공, 감리용역 및 보수, 운영업
31. 체육시설업
32. 외식사업, 식음료(주류 포함) 수출·입, 판매 및 중개업
33. 종합환경영향평가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및 경관영향평가대행업
34.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업
35.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관련 부대사업 투자, 운영업
36. 골재 채취 및 판매업
37. 노인복지시설 및 일반요양시설 운영업
38. 원자력 이용업
39. 청소년수련에 관한 사업
40. 영화상영, 영화제작 수출·입, 배급 기타 공연관련사업, 종합유선방송업
41.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2. 정보통신서비스(전화, FAX, DATA 교환) 및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
43.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판매업(BETACAM VCR, CAMERA, 기타 장비),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4.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업
45.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
46.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7. 신용카드업
48. 환전업
49. 문화교육 및 사설강습소 운영업
50.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51. 통신판매업
52. 시계, 보석 기타 귀금속 판매업
53.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54. 국내외 여행업 및 선박·항공기 예약발급 대행업
55. 이사 대행 및 일반 택배업
56. 문화이벤트업 및 생활서비스업
57. 인터넷 방송업
58. 보험 대행업
59. 국내외 서적 및 음반 판매업
60. 주택건설사업
61. 선박부품조립 및 제조업
62. 강구조물, 철강재 설치 공사업
63.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64.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65. 전시 및 행사 대행업
66.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6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68.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69. 국내외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70. 구역전기사업 및 지역난방사업
71.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72. 가스사업
73. 항만 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74.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75. 부동산 임대사업
76. 연료전지 연구용역
77. 전기공사업
78. 국내외 자원, 에너지 개발 및 운영
79. 환경 관련 기술개발 사업
80. 석탄 가스화 관련 사업
81. 석탄의 개발, 수송, 수입 및 판매업
82. 폐자원에너지 관련 사업
83. 국내외 발전·에너지사업 관련 인력파견(송출)
84. 국내외 발전·에너지사업의 건설기술 및 관련 용역
85. 건설기계대여업
86.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소재지)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의 주식의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기한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되 11,000,000주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우선주식의 최저배당률은 액면가액 기준, 연 1%로서, 발행 시 이사회가 배당률을 결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배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영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그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신주발행)

- ① 회사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②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삭제)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회사가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의 필요 시 액면총액이 금 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 외국인 합작법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단,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가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시가발행)

- 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8,620,000주로 한다.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삭제)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며 매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
- ③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2,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1,9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정한다.
 -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일까지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6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의 총액이 금

5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일의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신주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20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는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5. 회사의 합병계약(단,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 제외)
6. 이사회가 회사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6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27 조 (이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3명 이상으로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임 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각 이사의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보 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결선임 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임기로 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보 수)

-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며, 세부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의 2(보상)

회사는 이사가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이사 중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이를 소집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1 조의 2(이사회 권한)

- ①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④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3(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1 조의 4(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5(긴급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장인 대

표이사가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1조, 제3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각 대표하고 일체의 회사업무를 통할한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4 조의 2 (비등기임원)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 임원을 둔다.
- ② 비등기임원의 임명과 업무분담은 이사회회장인 대표이사가 한다.
-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와 성과금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임에 따라 이사회회장인 대표이사가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④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28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5 조 (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장인 대표이사의 명으로 임원대우의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3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한다.
- ④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7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년도)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 기말에 결산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 비치)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

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연결재무제표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42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부 칙

제 43 조 (준칙규정)

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4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 조, 제 21 조, 제 36 조, 제 41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그리고 제 37 조, 제 37 조의 2 의 개정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중 제 9 조 제 3 항 제 3 호, 제 24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은 제 12 기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각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제 20 조 및 제 20 조의 2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